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418
----------	-------

발의연월일 : 2026. 4. 17.

발 의 자 : 고민정 · 진성준 · 박정현
김문수 · 김준혁 · 김 윤
박지원 · 박성준 · 조인철
박지혜 · 문금주 · 송재봉
이광희 · 백승아 · 김준환
의원(15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임을 「대한민국헌법」에 명시하고 있음. 이러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었듯이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가치관과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사회적 갈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교육은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나, 현재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이

행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아울러,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토의·토론 수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의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4조).
- 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헌법적 가치 존중 및 토의·토론 진흥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며, 특정 견해의 강압적 주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되도록 함(안 제5조).
- 라.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 등의 내용을 포함함(안 제6조).

마.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시·도 교육청의 연도별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둠(안 제11조).

사.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함(안 제12조).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이란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원리를 토대로, 개인과 공동체, 지역사회와 세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문제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대화와 참여를 통해 공동의 해결을 모색하며,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3.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을 말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학교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① 학생은 개인의 능력이나 사회적 배경에 상관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장기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입장이나 관점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균형적으로 제공하고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다루어야 하며, 학생들이 사회문제 해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④ 교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가치와 기본원리 존중
2. 학생의 자율적인 토의·토론 진흥
3. 민주시민으로서 학생의 실천적 역량 함양
4. 교육자료의 신뢰성 확보 및 정보 출처의 투명성 유지
5. 학생의 자율적 판단 존중 및 다양한 관점의 균형 확보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이 제4항의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한민국헌법」의 내용과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가치
2.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와 제도
3.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자유와 책임
4. 의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정당, 언론, 이익집단, 각종 시민단체의 성격 및 기능과 역할
5. 생태와 환경, 평화, 인권 존중, 미디어 문해 및 선거 참여 등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가치와 역량
6. 민주적 토론 및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이해와 실천
7. 비판적 사고를 통한 사회참여 및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와 실천

8. 그 밖에 민주시민의식의 함양과 실천을 위한 내용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 및 실시 계획
2. 교원의 전문성 강화 방안
3.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교육청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계획수립 등의 협조)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세미나,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방식(이하 이 조에서 “공청회 등”이라 한다)으로 국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①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교육의 중립성과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 교원으로 재직하거나 교육 활동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학교·교육행정기관,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교원단체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

2. 학생의 보호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학부모단체 등이 추천한 사람
3. 민주시민교육 분야의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 및 학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조계·종교계·언론계·문화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해당하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학생자치기구의 대표로서 관할 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 및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매년 학교민주시민교육을 계획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학교민주시민교육 지도 역량을 강

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는 소재국의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교원의 연수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에게 학교 민주시민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